

농업인 소비자 보호사업



김상배
농협중앙회 하나로봉사실 과장

지난달 호에서 소비자 주권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싶어하는 문의가 대단히 많았고 또 그사이에 농업인의 소비자 권리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업인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농업인 소비자 보호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농업인도 소비자다

농업인은 기본적으로 생산자이다. 흙과 생명을 주무르고 다듬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직업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업생산이 흙과 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을 마련해야하고 땅을 일구려면 농기계가 있어야 하며 비료 농약도 없어서는 안된다. 또 비닐, 파이프, 육묘상자같은 기본적인 장비와 양

수기, 분무기 같은 재해대책장비, 수확을 위한 콤바인과 PP포대, 그리고 누구나 꼭 갖추어야 하는 삽, 낫, 호미같은 소농기구 등 농사용품만 손꼽아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축산농가도 마찬가지다. 동물약품, 초자용 종자, 배합사료, 귀표, 주사기와 치료장비, 축사와 난방시설, 청소도구, 착유기와 냉각기 등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 종류가 더 많고 사용량도 많을 것이다.

농업생산을 위해서는 이처럼 많은 물품, 아니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물품을 사서 써야 한다. 이러한 물품의 구입과 소비면을 보면 생산자로서의 문제보다 오히려 소비자로서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다.

특히 농산물의 생산원가에서 이러한 물품값의 비중이 대단히 높은 반면 농산물의 가격은 농가의 희망이나 요구가 무시된채 농산물시장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농업경영에서 성공여부는 농업생

산자재의 소비쪽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축사나 비닐하우스의 건축공사, 농기계의 수리와 정비, 농업용전기, 비료나 사료의 배달, 가축의 운송, 수의사의 진료 등등 서비스 분야의 비중도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농업생산의 직접원가를 구성하는 부분이외에도 자재나 농산물의 시장조사, 자금의 차입이나 조달, 영농기술의 습득 등 간접적인 원가를 구성하는 부분과 관련된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농업생산부문만이 아니라 가계부문은 그 전체가 완전한 소비생활이다.

한가정으로서의 농기를 살펴보면 스스로 생산하여 소비하는, 즉 자급자족하는 쌀과 채소, 닭과 달걀 등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서 쓰게 된다.

집집마다 꼭 있어야 하는 가전제품과 옷가지, 주택자재, 그릇과 취미용품, 전기, 전화, 치약과 비누, 책과 연필 등 모든 생활 필수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인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소비물자의 질과 양, 종류가 모두 급격히 높아지거나 많아지고 있다.

또 그러한 소비생활면의 불합리나 불공정, 불이익은 다른 산업인이나 계층에 비해 우리 농업인에게는 훨씬 더 많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농업인은 누구나 “생산자”라는 고정관념속에서 소비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 관계로 농업인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도 농업인의 소비자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이제부터는 “농업인도 소비자”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져야 하고 “소비생활에서의 승리가 곧 농업경영의 승리”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농업인의 소비자 문제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농업인은 농업생산부문과 가정생활 양쪽에서 모두 소비생활을 해야하는 소비자인 관계로 도시민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소비자문제를 갖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농촌이기에 도시보다 불리한 사회적 여건, 즉 교통의 불편, 지리적으로 물품 구입처와 멀리 떨어지는 점, 아직도 보수적이고 온전한 사고방식 등

도시와 많은 다른점이 있어 가전제품의 사후봉사(AS) 등에서 부족한 물품구입정보, 시장에서의 홍정미숙, 할부계약에서의 생소함 등 더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농업생산이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한 자재나 물자가 좋은것인지 부적당한것인지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즉 소가 병이 났을때 그 원인이 처음부터 잘못 사온 송아지 탓인지, 사료탓인지, 약품이나 수의사의 잘못된 치료 탓인지, 또는 이웃집의 시끄러운 소음 때문이었는지가 명확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수많은 물품의 품질과 규격이 정해져 있지만 농업생산 자체중에는 규격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있고 경영비 절감을 위해 규격 미달품을 써야 할 때도 있고 겸사합격품중에도 비규격품이 끼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자재의 품질불량은 곧 사용중에 파손이나 작동중단 또는 작동불량등으로 이어져 작물이나 가축의 생육불량이나 실농, 폐사 등에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물품공급자와 분쟁이 생겨도 피해 농업인 혼자 힘으로 피해배상을 받아내기는 커녕 대등한 대결을 하기도 힘들다. 상대는 자본과 기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그러한 사고처리에 능숙할 뿐 아니라 분쟁해결에 뛰어난 사원이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고 도와주는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보호기관도 농촌에는 거의 없다. 실제로 우리 농업인 중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농어촌 방방곡곡에 소비자보호기관이 생기고 소비자단체가 생겨야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10년이내에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사무소를 열고 운영하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고 그에 비례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0년 후에도 그러한 꿈은 이를 수가 없을 것이다.

소비자보호운동의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 여러나라 도 농어촌에 소비자보호운동조직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의 소비자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이 된다.

현재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개선의 전망이 없다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들의 자세가 어떠할지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인의 소비자 문제는 이러한 환경적 원인과 함께 우리 농업인에게도 한 원인이 있다.

농업인 스스로 소비자라는 인식이 아직 없고 피해가 생겨도 고발하거나 다투거나 하는것이 익숙하지 않을뿐 아니라 어지간한 문제는 자신에게 탓을 돌리고 참고 고쳐가며 스스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더 많기 때문이다.

지난 95년 한해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처리한 20만건의 소비자상담중 농어촌에서 온것은 0.2 %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농업인소비자보호사업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은 농업인의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소비자보호사업'이 마련되었다.

농협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농업인의 소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96년 12월13일 농협중앙회 원철희 회장과 한국소비자보호원 협신행 원장이 협약조인을 한것이다.

농업인소비자보호사업은 농어촌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인, 어업인, 축산농가, 농어촌주민, 지방중소도시민, 공무원, 회사원 등 총 2천만에 이르는 농어촌 주민 모두가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사업구조는 농협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능률과 내용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도록 하고 있다.

즉 농협은 전국의 시,군과 읍,면,동은 물론 산골과 섬에까지 골고루 흩어져 있는 4천여개 농협 사무소에서

- 소비자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 증거보전이나 현장 기초조사 등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법률로써 부여된 권한과 능력을 발휘하여 피해심의, 판정, 조정결정 등을 맡아주는 것이다. 이에따라

- 농어촌 지역에서의 소비자 피해고발창구가 4천여

개로 늘어나고 그 위치도 읍,면, 소재지이므로 농어촌 주민의 피해고발이 극도로 쉬워지게 되었고

○ 피해조사에 걸리던 시간이 3~10일 걸리던 것에서 1일로 짧아져 업무능률이 몇배나 높아졌을 뿐 아니라

○ 피해조사가 충실히지고 신속해짐에 따라 피해구제 내용이 훨씬더 알차게 될 것이 확실해졌다.

농업인소비자보호사업을 통해 보호를 받게되는 것들은

◇ 영농 및 축산용자재나 생활필수품의 구입과정에서 생기는 가격이나 계약조건의 문제

◇ 구입한 물건을 사용할때 생기는 성능부족, 품질불량, 사후봉사(AS)의 문제

◇ 물품의 불량에서 비롯되는 작물이나 가축의 생장 불량, 폐사 등 재산피해와 사용자의 부상 등 신체상피해

◇ 건축공사, 수리나 정비, 여행, 전기공급 등 서비스 분야에서 생기는 손해나 분쟁 등으로

농사일이나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소비자로서의 문제 모두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이용절차는 지극히 간단하다.

가까운 농협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신고방법은 직접 찾아가도 되지만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도 된다.

일단 농협에만 신고하면 그후의 일은 농협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모두 알아서 처리해 준다.

특히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사건을 심의하여 사업자에게 시정이나 배상을 명령 또는 권고 했는데 사업자가 그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농협이 곧 법률구조절차를 밟아 사업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곧이어 소송을 벌인다음 가압류한 재산을 경매처분하여 손해본만큼을 되찾아 준다.

이런점에서 종전의 소비자보호사업보다 한발 더 발전하고 또 강력해진 것이 '농업인소비자보호사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과정은 무료이다.

사업의 의의

이 사업은 농업인에게는 잃었던 권리를 되찾은데서 나아가 농업인의 사회적 지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그것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부터 농업인은

직업인으로서 다른 어떤 분야의 직업인보다 지위가 낮거나 가볍지 않은 신분이 된 것이다.

농업인의 뒤에는 '농협'과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크고 강력한 배경이 있는 것이다.

참고로 농협의 목표는 농업인이 『국민의 식량 등 기초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의사, 대학교수, 성공한 정치가, 세계적인 과학자 등과 같은 존경과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

그리고 농협 조합원이 아니어도 이사업을 이용하는데 차별하지 않는다.

다만 이유없이 농협을 혐오하거나 농협사업을 방해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언제라도 농협에서 최선을 다해 받들고 도와 준다.

그리고 대규모 전업축산가라 하더라도 가까운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거나 조합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다. 이런 사업의 혜택을 쉽게 입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조합원의 지지와 협조로 사업이 순조로워 진다.

이 사업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갖는다. 창의력을 발휘하고 기관간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와 다름없던 농어촌의 소비자 보호문제를 해결했고

☞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되는 정부예산을 절약했을 뿐 아니라

☞ OECD 가입의 한 조건이던 소비자보호문제를 최단 기간에 가장 쉽게 해결하는 등 예상치 못했던 큰 성과를 거두었고 최근 주창된 "세계화", "국가경쟁력 10% 향상" 등의 최초 성공사례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부처나 기관, 일반 기업에까지 창의력 발휘와 상호협력 분위기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시발점이 된 것이다.

아울러 기업 등 경제계 전반에 끼친 파급효과도 대단히 크다.

기업의 소비자 보호의욕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진출할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시장과 여전히 비슷한 우리나라 농촌에서 소비자 권익향상문제를 미리 시험,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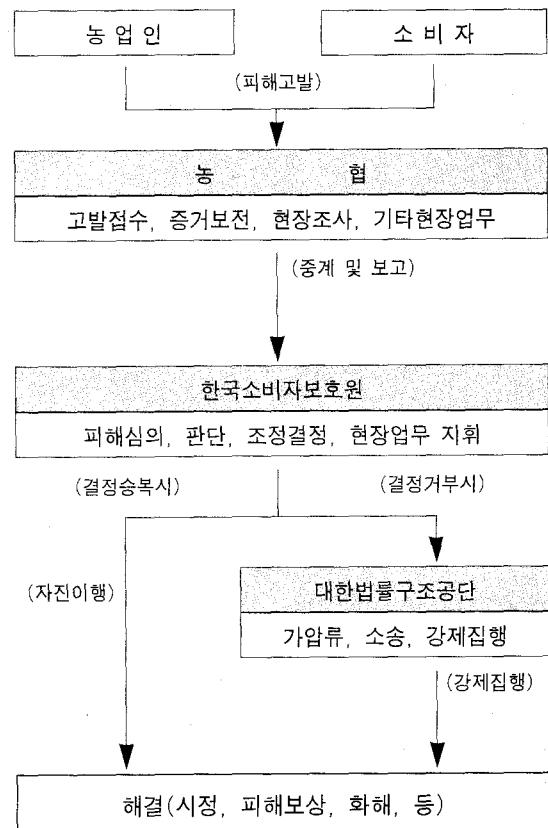
하고 대비케하는 효과가 있어 "세계경영"을 도와준 것이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큰 수혜자는 역시 농업인이다.

농업인의 소비자 권리를 알게 된 만큼 농업인의 생산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체감교육시키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이 숙명적으로 갖고 있던 소외감과 피해의식을 벗어던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과 농촌사회에서의 공정거래 풍토가 조성된 것 등 정서적인 효과와 사회적인 효과 역시 금액으로 평가하기 힘든 큰 수확이라 할 것이다. ☺

===== 농업인 소비자 보호사업 체계 =====



<필자연락처: 02-397-5555>